

국가대표선발 및 관리 시행세칙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대한수중·핀수영협회(이하 ‘협회’라 칭함)의 국가대표 임원, 선수의 공정한 선발과 효율적인 운영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세칙은 국가대표 임원, 선수에 적용한다.

제2장(국가대표 임원, 선수선발)

제3조(임원선발) 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감독 및 코치(이하 ‘임원’이라 칭함)는 지도자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갖추고 수중스포츠와 관련된 제반 이론적 지식과 실기를 겸비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발한다.

제4조(임원의 자격) 1. 다년간 협회의 등록단체에서 선수 지도 경력이 있거나 3년이상 선수로 활동하면서,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자로서 올바른 국가관을 갖고 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선수의 경기력 향상에 전력투구할 수 있는 자.

2.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경기지도자 연수과정에서 1급 또는 2급 지도자 자격을 소유한 자.

3.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으로 제4조 1,2항 이외의 임원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선수선발) 선수로서 품위와 인격을 갖추고 우수한 경기력을 소유한 자로서 경기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선발한다.

제6조(선발시기 및 종류)

1. 매년 6월말과 12월말 차기 6개월간의 상비군을 선발한다.

2. 국가대표 : 협회에서 공식 파견한 국제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말한다.

3. 청소년대표 : 협회에서 공식 파견한 국제청소년대회에 출전한 선수를 말한다.

4. 상비군 : 협회에서 국제대회를 대비하여 선발한 19세이하의 선수를 말한다.

제7조(선발인원 및 방법)

1. 상비군 선수는 기준기록을 통과한 종목별 전체 순위 5위까지 포함된 선수를 상비군으로 선발한다.

2. 대표선수 선발대회에 출전한 선수 세부종목 1위 또는 2위 선수를 대상으로 전차 국제선수권대회 결승 기록을 비교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상위입상에 근접한 선수를 우선선발하고 출전경기는 본 협회에서 전액 지원한다.

3. 필요에 따라 국제대회파견 선발전(기록평가회)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4. 선수선발 최대인원은 남,여 각 10명 이내로 한다. 코치는 선수가 12명 이상일 때 2명을 선발하며, 자비를 희망하는 코치는 그 소속팀 선수만 지도하는 조건으로 선발할 수 있다.

5. 계영종목 출전선수 배정은 표면100m, 200m 공식기록 순으로 한다.

제8조(선발대상대회)

- 학생선수권대회
- 충무공대회
- 전국종별선수권대회

- 전국체육대회
- 국제대회(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월드컵)
- 기타(선발전)

제3장(국가대표 임원, 선수의 관리)

제9조(의무) 임원 및 선수는 본 협회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임해야 하며, 수중스포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임무)

1.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강화훈련 참가 선수의 관리.
 - ② 훈련계획서 및 훈련보고서 제출(소정양식)
 - ③ 국제대회 참가보고서 제출(소정양식)
 - ④ 본 협회의 지시사항 이행
2. 선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합숙, 합동훈련 기간 중 임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
 - ② 임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장 이탈 불가
 - ③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규정 준수
3. 이사회가 별도승인이 없는 한 대표팀 훈련기간과 국제대회 파견 중 기타 다른 인원이 훈련에 함께 참여하거나 숙식 등 공적 행사에 참여를 금한다.

제11조(자격제한)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자격을 제한한다.

1. 제9조와 제10조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하여 징계조치된 자
2. 신체 또는 정신질환으로 훈련을 수행할 수 없는 자
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수중스포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2회이상 훈련에 무단불참한 자
5. 임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선수지도에 태만하거나 지도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7. 품행, 성격 기타사유로 단체생활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8. 본 협회 지시에 불응한 자.

제12조(훈련방법) 훈련방법은 합숙, 합동훈련, 개인훈련을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정한다.

제13조(징계) 1. 본 협회에서는 제9조, 제10조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하거나, 제11조의 자격제한에 해당하는 임원 및 선수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

2. 징계조치는 상벌위원회에 징계사항을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14조(자비파견) 1. 본 협회에서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선수가 국제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를 원하는 경우 경기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승인을 거쳐 자비선수를 파견할 수 있다.

2. 자비 선수는 항공료, 체재비, 교통비 등 대회 참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 경기위원회는 국제대회에 자비선수 선정에 있어서 선수기록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핀수영 위상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대표선수 선발전에서 세부종목 전체3위 이내에 한하여, 세부종목 엔트리 규정 이내로 선발한다.

4. 제7조에 의거 국가대표선수를 세부종목 엔트리 범위내에서 우선 배정하고 참가하지 않는 세부종목에 한하여 자비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5. 자비로 출전한 선수는 경기실적증명서는 발급 받을수 있으나 국가대표선수 확인원은 발급받을수 없다.

제14조(부칙)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2.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제정 시행한다.(2006. 6. 1)
3.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개정 시행한다.(2009. 12. 22)
4.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개정 시행한다.(2010. 6. 1)
5.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개정 시행한다.(2014. 8. 27)
6.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세칙으로 개정 시행한다.(2015. 1. 16)